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대책

박 수 만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선임국장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대책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전문국장 박 수 만

1. 그동안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기업의 의무고용 대상 29개 직종 가운데 산업보건의 등 13개 직종은 자율고용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자를 비롯한 14개 직종은 겸직이나 공동채용, 외부위탁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해고, 배치전환 등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안전관리자 9,537명(7.55%) 및 보건관리자 2,088명(18.5%)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지난 '99년도 전국의 근로기준위반건수는 3만3천건인데 반하여 산업안전위반건수는 5만8천3백81건으로 사업주들의 희박한 안전마인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IMF 이후 사업주의 관심은 생산성 향상에, 노동조합의 관심은 고용안정에 집중되어 있어 안전마인드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99년 산재발생현황은 5만5천4백5명으로 전년도 5만1천5백14명보다 3천8백91명(7.55%) 증가하였으며, 직업병자는 1천5백21명으로 전년도보다 2백33명(18.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전체 재해의 약 85%가 발생하였고,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서 약 60%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문제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2000년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약 88만여 사업장에 근로하는 약 170만명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안전과 보건관리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지역의 산재발생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노동자 45만5천7백97명중 4천9백4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1백6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재해율 1.08은 '99년 전국 재해율 0.74를 상회하였고, 사망만인율 3.71은 '99년의 전국 사망만인율 3.08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6대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노조 조직률이 낮고, 노동집약적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장시간 근로, 열악한 작업환경, 법정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부

족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다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발생현황

연도	적용 사업장수	대상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
			계	사망	부상	신체장애 자	직업병	
'98	215,539	7,582,479	51,514	2,212	48,014	24,759	1,288	0.68
'99	249,405	7,441,160	55,405	2,291	51,593	19,591	1,521	0.74
증감 (%)	33,866 (15.71)	-141,319 (-1.86)	3,891 (7.55)	79 (3.57)	3,579 (7.45)	-5,158 (-20.87)	233 (18.09)	0.06 (8.82)

자료 : '99산업재해분석, 노동부, 2000년6월, 10면

지역별재해현황

지역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지역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계	7,441,160	55,405	0.74	경기	1,190,890	10,906	0.92
서울	2,150,159	8,453	0.39	충북	238,207	1,775	0.75
부산	455,797	4,942	1.08	충남	280,133	1,869	0.67
대구	371,166	3,510	0.94	전북	219,440	2,003	0.91
인천	556,561	5,540	1.00	전남	174,466	1,161	0.67
광주	222,034	1,514	0.68	경북	344,686	2,476	0.72
대전	203,194	1,464	0.72	경남	739,645	6,894	0.93
강원	230,182	2,560	1.11	제주	62,600	338	0.54

자료 : '99산업재해분석, 노동부, 2000년6월, 79면

3. 그동안 노동조건의 일부이나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인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재예방활동의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는 ▲산업안전 보건정책 연구 및 개발 ▲산재예방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노조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 ▲산재상담 그리고 ▲작업환경측정 및 안전진단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12월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을 건립하였고, 작업환경측정기관 운영

(’97년10월) 및 안전진단사업(’99년4월) 수행은 임금인상 중심의 활동에 한정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과로사 등 신종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감시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새로운 보건관리모형인 보건관리자 공동채용제도의 입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현행

-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그러나 보건관리자 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관리자 공동채용제도를 두고 있음. 따라서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3개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함.

(2) 보건관리자 공동채용제도

- 동일한 산업단지내 사업장에서만 공동채용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에서 동일한 지방노동관서내의 사업장에서 공동채용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3이하의 사업주가 공동채용하는 것을 2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노동자수를 1,000인 이내로 하되, 공동채용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상시 노동자수 300인 미만으로 제한하여 사업주의 공동채용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50인 이상의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일치함. 끝.